

# 學會回顧

李 相 敦\*

## I. 學會動向

1984年度에도 本學會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與件에도 불구하고 모든 任員과 會員이 마음을 합쳐 다음과 같은 活動을 전개하였다.

### (1) 1984年度 總會 및 研究發表會 개최

① 日時：1984.7.21. 18:00~21:00

② 場所：스칸디나비아 클럽

③ 總會의 決議事項

(i) 會則改正：常任理事를 6人으로 하고, 任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하며, 常任理事會의 決議는 구성원의 過半數의 찬성으로 하기로 결의.

(ii) 任員改選：新任會長에 徐元宇 교수(서울大), 副會長에 全昌祚 교수(東亞大)와 金伊烈 교수(中央大), 監事에 金基洙 교수(漢陽大)와 金元主 교수(慶北大)가 선임되었으며, 한편, 常任理事로는 李尙圭 변호사, 金哲洙 교수(서울大), 吳錫洛 변호사, 具然昌 교수(慶熙大), 金亨澈 環境廳 計劃調整局長, 李均成 교수(外國語大) 및 幹事로는 李相敦 교수(中央大)가 선임되었다.

④ 研究發表會 主題

(i) 具然昌, 美國 國家環境政策法의 시행과 法院의 役割

(ii) 尹瑞成, 排出賦課金制度의 運用과 그 問題點

### (2) 1984年度 秋季 研究發表會

① 日時：1984.12.1. 15:00~:18:00

---

\* 本學會 幹事

- ② 場所：韓國社會科學圖書館 세미나실
- ③ 研究發表會 主題
  - (i) 申鉉德, 環境問題의 制度的 接近方法
  - (ii) 朴秀赫, 獨逸의 環境保全法制

## II. 環境法學의 研究動向

### (1) 環境法研究 第5卷 發刊

本學會는 1983. 12. 20 字로 環境法研究 第5卷을 發刊하였다. 第5卷에 는 특집으로 排出賦課金 制度에 관한 論文 3편을 포함한 다음의 論文이 게재되어 있다.

- ① 鄭在吉, 排出賦課金制度의 意義와 比較法的 考察
- ② 尹瑞成, 排出賦課金制度의 運用과 그 問題點
- ③ 權五乘, 排出賦課金制度와 類似한 制度
- ④ 李相敦, 海底石油開發 過程에서 發生하는 海洋汚染의 法的 問題點

### (2) 會員들의 1984 年度 研究動向

◦ Yeon-chang Koo,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A Critical Evaluation of Its Legislative Scheme,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Ph. D. dissertation, Univ. of Wisconsin/Madison, 1984).

◦ 具然昌, 「判例研究：公害訴訟에 있어서의 因果關係와 蓋然性立證」(大判 1984. 6. 12, 1981 다 558), 大韓辯護士協會誌 1984年 10月號

◦ 徐元宇, 環境權의 性質과 效力(서울大 法學 25 권 1 호, 1984)

◦ 申鉉德,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國際條約과 國內法, 國際法學會 論叢, 제 28 권

◦ 李相敦, 海洋環境法 序說——海洋汚染의 現況과 問題點(中央大 論文集 사회과학편 제 28 집, 1984)

◦ 李相敦, 海洋投棄에 의한 海洋汚染의 法的 規制(中央大 法學論文集 제 9 집, 1984)

- 李相敦, 油類에 의한 汚染被害를 填補하기 위한 美國의 法制(海法會誌 제 6 권, 1984)
- Sang Don Lee, Marine Environment Law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11(1984)
- 李相敦, 海洋汚染의 規制를 위한 現行國內法の 諸問題點(法曹 제 33 권 4~5 호, 1984. 4~5)
- 李英峻,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地域的 協力 모델로서의 Baltic 協約에 관한 考察, 國際法學會論叢, 제 26 권 2 호
- 韓昌奎, 美國의 環境訴訟法制 概觀(成大 社會科學 제 20 집, 1983)